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동향(10.24)

##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청(BPJPH)에서 할랄인증 신청 접수
- 온라인을 통해서 할랄인증 직접 신청 가능
  - (기존) MUI가 지정한 할랄인증 대행업체 인니할랄코리아, VDF를 통해 할랄인증 신청
  - (변경)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할랄인증 직접 신청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 인도네시아올라마위원회(MUI)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

할랄인증청(BPJPH) 기능	
-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 할랄제품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감독

###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절차

- ①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
- ②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감사기관(LPH)에 검사요청
- ③ 할랄감사기관(LPH)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④ 할랄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인증청(BPJPH)에 전달
- ⑤ 할랄인증청은 MUI(현 할랄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 (FATWA) 여부 검토 요청
-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인증서 발급

## □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인증 의무화

-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20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실시
  - \* 식품과 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하람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 의무
-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신규 신청
-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등록 불가

#### □ 계도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수입 가능

-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 계도기간에는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8년 31호에 의거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엄격히 확인

#### □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서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 구분

- 2024년 10월 17일부터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구분하여 판매
  - \*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 구분

####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

- 할랄인증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됨
  - 해당 해외할랄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 가능
- 한국내 할랄인증 기관 교차인증을 통해 한국식품 할랄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가 가장 중요
- 해외할랄인증기관 승인 요건 문서
  1.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y) 프로필(원산국, 기관명, 기관 분류, 주소,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2. 인도네시아 종교부/할랄인증청(BPJPH)과의 협력 신청(연장) 요청서

3. 조직도
4. 샤리아(Syariah) 위원, 이슬람 학자(Ulama) 목록
5. 할랄제품 인증 절차(감사 메카니즘 포함)
6. 할랄 적정성/승인 평가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할랄검사 대상 제품 범위 (제품 및 서비스 분류)
7.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와 협력 증빙
8. 사무실 소유 또는 임대 증빙
9.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할랄인증서 발급 목록
10. 주재국 표준 기관의 승인 증빙(ISO 17065 및 샤리아 기준)
11. 국제 인증서(SMIIC/IHAV 등), 소유 시 제출
12. ISO 17025에 의거 승인된 실험실 협력 증빙, 에탄올(Ethanol) 함유량 및 DNA 검사 기기 소유 증빙
13. 주재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추천서
14. 할랄인증 제품 정보
15. 유효기간 만료된 협력 증빙 서류
16. 주재국 발행 할랄인증기관 사업자등록증
17.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추천서/안내서

**KEWAJIBAN**  
BERSERTIFIKAT HALAL BAGI PRODUK  
Dimulai 17 Oktober 2019

@Kemenag\_RI | Kementerian Agama RI | @Kemenag\_RI | Kemenag RI

**PELAKSANAAN PENAHAPAN**  
KEWAJIBAN BERSERTIFIKAT HALAL

Dimulai dari **17** 2019  
Sampai Okt 2024

1. Produk makanan dan minuman, serta Produk jasa yang terkait dengan produk makanan dan minuman.
2. Produk yang kewajiban kehalalannya sudah ditetapkan dalam peraturan perundang-undangan.
3. Produk sudah bersertifikat halal sebelum Undang-Undang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berlaku.
4. Produk jasa yang terkait dengan produk sebagaimana dimaksud pada angka 1, angka 2, dan angka 3.

@Kemenag\_RI | Kementerian Agama RI | @Kemenag\_RI | Kemenag RI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안내 인니 종교부 SNS 내용

## □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동향

### 1. 할랄인증법 향후 5년 인증 의무화 유예

- 종교부 장관 Lukman Hakim Saifuddin은 2019년 10월 16일 언론에 할랄 인증법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할랄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는 유예될 것이라고 발표
  - 식음료의 경우 인증 의무화는 5년간 유예하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제품 별로 유예기간이 상이(7년 예상)
-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세부절차, 비용, 할랄로고 등 확인이 안됨

### 2.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행

- 기존 할랄인증 기관인 LPPOM MUI는 할랄인증 업무 불가
  - \* 기존 할랄인증을 진행중에 있는 제품의 경우 LPPOM MUI가 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만료일까지 인정)
- 종교부령 미제정으로 할랄인증청(BPJPH) 담당자에게 이메일(certifikasihalal@kemenag.go.id) 접수만 가능하며, 재무부령 미제정으로 우선 접수 후 별도 할랄인증 비용 산정
  - \* 할랄인증청(BPJPH) 담당자는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이메일로 서류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메일 회신기간은 미정이라 답변
- 할랄인증 절차
  - BPJPH접수 -> 등록 -> 할랄검사소(LPH) 검사 -> LPH에서 결과를 BPJPH에 보고 -> BPJPH는 해당 결과를 MUI에 전달 -> MUI는 파트와 위원회를 통해 할랄유효성 판단 -> MUI, BPJPH에 결과 전달 -> BPJPH, MUI 결과 수령 후 7일 이내 할랄인증서 발행
  - \* LPPOM MUI가 첫 번째 LPH(할랄검사소)로 선정, 당분간 LPPOM MUI에서 할랄 검사 업무 이행

### 3. 주요 언론 동향(10.17~22)

- 대부분 언론은 BPJPH가 할랄인증 업무를 본격 시행함을 보도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PJPH가 업무수행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지적(CNN Indonesia, 10.21)

- 원스톱 통합서비스에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및 양식이 없음
- BPJPH 웹사이트 접속 불가
- 할랄인증 의무화법 세부시행규칙 미제정
- 할랄인증 구비 조건 및 서류 미발표
- 직원들의 할랄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출처 : 자체 조사, CNN INDONESIA(2019.10.21)

<첨부1>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33호 법률 시행규정 2019년 31호 주요내용 요약

### □ 제 1 장

#### ○ 제 2 조

- 인도네시아로 수입,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은 할랄인증 의무
- 하람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할랄인증 의무에서 제외

### □ 제 2 장

#### ○ 제 4 조 : 할랄인증청(BPJPH)의 권한

- 할랄제품보장(JPH) 정책 공식화 및 제정 권한
- 할랄제품보장(JPH) 규범, 표준, 절차 및 기준 제정
- 제품의 할랄 인증서 및 할랄 라벨 발급 및 취소
- 해외 제품에 할랄 인증서 등록
- 할랄 제품 사회화, 교육 및 공포
- 할랄검사기관(LPH)에 대한 인가
- 할랄 감사관 등록
- 할랄제품보장(JPH)에 대한 감독
- 할랄 감사관 육성
- 할랄제품보장(JPH) 실시 분야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

### □ 제 4 장

#### ○ 제 54 ~ 57 조

- 제품 판매 수단 및 판매 과정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은 구분되어야 함
- 비할랄 제품 판매에 사용되는 판매설비, 설비청소,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설비는 번갈아 사용 불가

## □ 제 6 장

### ○ 제 64 조

- 할랄인증청(BPJPH)과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에서 발급된 할랄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은 할랄인증청(BPJPH)에 할랄인증 신청을 할 필요 없으며, 할랄인증청(BPJPH)에 사전 등록만 하면 됨

### ○ 제 65 ~ 66 조

- 할랄인증청(BPJPH)에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 시 아래의 서류 첨부
  - 해외 할랄인증기관 발급 할랄인증서 사본
  - HS 코드번호가 부여된 수입품목 목록
  - 제출한 서류는 사실이며, 유효하다는 진술서
- 해외 발급 할랄인증서에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할랄라벨 근처에 등록번호를 부착해야 함

## □ 제 7 장

### ○ 제 68 조

- 할랄인증 필수 제품은 다음과 같음
  - 물품 및 서비스
- 물품은 다음을 포함
  -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
  - 도축,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출하

### ○ 제 72 조

- 제 68 조에서 정한 할랄인증 대상 제품의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시행
  - 식품과 음료부터 시작하며, 식품과 음료 이외의 제품이 단계적으로 시행

## □ 제 9 장

### ○ 제 82 조

- 본 규정 이전에 유통되고 거래되었으며, 할랄인증서가 있는 제품은 해당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

<첨부2>

❑ 가공식품 라벨링 관련 식품의약품(BPOM) 규정 2018년 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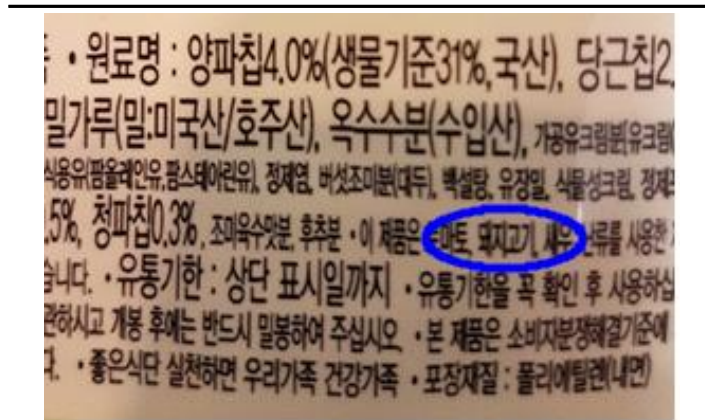
-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 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함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 표기로 인한 문제 발생
  - 수출용 포장재가 아닌 내수용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제품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표시된 한글 문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르면 **돼지고기**, 난류, 우유 등 21가지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경우 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



▲ 돼지고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문구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등록된 한국 수입식품들 중 다수에 위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소비자들에 의해 문제 제기 가능성 상존
- 가공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7년 27호의 개정안 2018년 31호 발표(2018년 10월 19일 시행)
  - 가공식품 제조 과정 중에 돼지 파생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 설비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촉한 경우 빨간 글씨와 테이블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함

식품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an/atau menggunakan fasilitas bersama dengan bahan bersumber babi**



▲ 해석 :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함께 제조 시설 및(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접촉하였음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 해석 :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접촉하였음

- 수입 식품 포장에 최소 의무 표기 사항
  - a. 제품명
  - b. 재료 성분 표시(전성분)
  - c. 중량 및 수량
  - d. 제조사와 수입사의 명칭과 주소
  - e. 할랄 정보(할랄 제품일 경우)
  - f. 제조일련번호 및 제조일
  - g. 유통기한
  - h. 수입식품등록번호
  - i. 특정 식품재료에 대한 원재료 출처(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기준)

## 할랄인증청(BPJPH) 조직도

